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72호, 2021. 6. 15. 공포, 2021. 12.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뿌리기업의 확인 절차 등 구체화(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신설)

개정 법률에서 뿌리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사후관리 및 확인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뿌리기업 확인 취소 시 취소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기준 등 구체화(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신설)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안정적 인력공급을 위하여 지원 내용의 근거를 마련함

다. 권한의 위탁 인용 조문 시정 등(안 제29조)

법률 인용 조문의 오류를 시정하여 법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뿌리기업 확인 제도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사무의 일부 권한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위탁하도록 명시함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추가(안 제30조)

뿌리기업의 확인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뿌리기술·산업의 확대 범위 구체화(안 별표 1, 별표 2)

뿌리기술이 기존의 주조, 금형 등 기반공정기술에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이 추가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뿌리기술과 이에 기반한 뿌리산업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이 뿌리기업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기업의 확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3(뿌리기업의 확인 취소사실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뿌리기업 확인서를 회수하고, 취소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기준)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일 것
2. 근로·복지 환경 및 성장역량, 인력양성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제23조의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23조의2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의4(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기술·기능인력의 정보 제공

2. 성과에 대한 전시·홍보 지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2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4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을 위한 신청서 접수

7.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위한 신청서 접수
제30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의 확인 사무

5.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사무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뿌리기술의 범위(제2조 관련)

□ 기반 공정기술 (6개)

기술 부문	전문분야
1. 주조 부문	가. 사형주조 나. 금형주조 다. 다이캐스팅 라. 정밀주조 마. 연속주조 바. 저압주조 사. 소실모형 주조 아. 특수주조
2. 금형 부문	가. 사출성형금형 나. 다색다중성형금형 다. 블로우성형금형 라. 복합성형금형 마. 프레스성형금형 바. 프로그레시브성형금형 사. 파인블랭킹금형 아. 특수성형금형
3. 소성가공 부문	가. 단조 나. 압연 다. 압출 라. 판재성형 마. 특수성형
4. 용접 부문	가. 아크용접 나. 저항용접 다. 특수용접 라. 브레이징 마. 칩레벨 접합 바. 보드레벨 접합

	사. 구조용 접합
5. 표면처리 부문	가. 전기도금 나. 무전해도금 다. 양극산화 라. 화성처리 마. 도장 바. 표면경화 사. 스퍼터링 아. 화학기상증착
6. 열처리 부문	가. 전경화열처리 나. 국부열처리 다. 침탄열처리 라. 질화열처리 마. 복합열처리 바. 비철, 특수금속열처리

□ 차세대 공정기술 (8개)

○ 소재다원화 공정기술 (4개)

기술 부문	전문분야
7. 사출·프레스 부문	가. 고분자 가공기술 나. 고분자 성형기술 다. 복합재료 제조공정 기술
8. 정밀가공 부문	가. 절삭가공 나. 연삭가공 다. 연마가공 라. 광에너지응용가공 마. 전기에너지응용가공 바. 화학에너지응용가공
9. 적층제조 부문	가. 분말가공기술 나. 기타 적층 관련기술
10. 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 부문	가. 고분자 박막제조기술 나. 고분자 코팅제조기술

	다. 제지공정
--	---------

○ 지능화 공정기술 (4개)

기술 부문	전문분야
11. 로봇 부문	가. 로봇생산자동화기술 나. 로봇 관련 IT·SW 다. 자동화기계 관련 IT·SW
12. 센서 부문	가. 계측기술 나. 센서기술 다. 시스템통합화기술
13. 산업지능형 SW 부문	가. SW솔루션 나. 생산관리 서비스 다. 계량분석 서비스 라. 시험관리 서비스 마. 검사관리 서비스 바. 분석관리 서비스 사. 품질관리 서비스
14. 엔지니어링 설계 부문	가. 설계기술 나. 생산공정모델링 서비스 다. 시뮬레이션 서비스 라. CAD관련 SW 마. CAM관련 SW 바. 구조관련 SW 사. 용접관련 SW 아. 소성가공관련 SW 자. 기타 뿌리기술관련 SW

비고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된 각 기술 부문별 전문분야 외에 각 기술 부문의 전문분야를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차세대 공정기술 분야 중 지능화 공정기술인 11~14번은 기반 공정기술 1~6번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기술 7~10번에 연계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기술로 한다.

뿌리산업의 범위(제3조 관련)

□ 기반 공정산업 (6개)

1. 주조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30101	주물주조기계

2. 금형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 소성가공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4101	액압 프레스
	29224102	기계 프레스
	29224801	금속 단조기
	29224802	금속 인발기
	29224803	나사 전조기
	29224804	금속선 가공기

	29224809	기타 금속성형기계
--	----------	-----------

4. 용접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4132	강관 제조업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2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5995100	용접봉
	28909301	아크 용접기
	28909302	저항 용접기
	28909309	기타 전기용접기
	29199201	가스 용접기 및 절단기
	29199209	기타 용접기

	29271102	반도체 조립 장비
	29271103	칩마운터

5. 표면처리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0499210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8909804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29299104	금속 표면처리기

6. 열처리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5921	금속 열처리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150101	공업용로
	29150103	전기로

□ 차세대 공정산업 (8개)

○ 소재다원화 공정산업 (4개)

7. 사출·프레스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92101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29292102	플라스틱 압출 성형기
	29292103	진공 및 열 성형기
	29292109	기타 플라스틱 제조기계

	29292200	고무 가공기계
--	----------	---------

8. 정밀가공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1101	레이저 가공기
	29221102	방전 가공기
	29221109	기타 전자응용 절삭기계
	29223101	머시닝센터
	29223102	전용기
	29223201	수치제어식선반
	29223202	범용선반
	29223801	드릴링기
	29223802	보링기
	29223803	밀링기
	29223804	탭핑기
	29223805	연삭기
	29223806	기어절삭기
	29223807	톱기계(금속용)
	29223809	기타 금속절삭가공기계

9. 적층제조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2100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10.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29291109	기타종이가공기계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	--

○ 지능화 공정산업 (4개)

11. 로봇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12. 센서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13. 산업지능형 SW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4. 엔지니어링 설계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비고

1. 분류번호, 업종명 및 품목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에 포함된 뿌리기술 활용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이라도 원재료를 1차 성형·가공하여 잉곳(ingot), 판, 봉, 관 등 1차 소재를 생산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3. 차세대 공정산업 중 지능화 공정산업인 11~14번은 기반 공정산업 1~6번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산업 7~10번에 연계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산업으로 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된 뿌리산업의 업종 외에 각 뿌리산업의 업종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u>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u> <u>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이 뿌리기업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u>

<신 설>

<신 설>

<신 설>

후단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기업의 확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3(뿌리기업의 확인 취소 사실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뿌리기업 확인서를 회수하고, 취소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기준)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일 것
2. 근로·복지 환경 및 성장역량, 인력양성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제23조의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

<신 설>

의2제1항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23조의2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의4(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기술·기능인력의 정보 제공
2. 성과에 대한 전시·홍보 지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지

	<u>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제29조(권한의 위탁) 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u>법 제28조제1항</u>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중소기업부장 관에게 위탁한다.	제29조(권한의 위탁) ① ----- ----- <u>법 제28조제2항</u>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 산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②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u>법 제14조의2에 따른 뿌리기</u> <u>업 확인을 위한 신청서 접수</u>
4.·5. (생략)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u><신 설></u>	7. <u>법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u> <u>좋은 뿌리기업을 위한 신청서</u> <u>접수</u>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제29조에 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생략) <u><신설></u> <u>2.·3.</u> (생략) <u><신설></u>	----- ----- ----- ----- ----- ----- ----- ----- 1. (현행과 같음) <u>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의 확인 사무</u> <u>3.·4.</u>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u>5.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사무</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연 락 처	(044) 203 - 4906